

4. 한국교원대, 서울대, 충남대, 일본문부성(오사카교육대), 전문연구년제 파견자(4호 연수 파견자에 해당), 경기도교육연구원 파견자는 현소속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평정하지 않음 (제4호 또는 제7호 파견자에 해당되는 경우)

**〈용어 정리〉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 가.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나.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  
다.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

**〈참고〉 「겸임 또는 파견근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개선 지침」 통보**

(중등교육과-22392호, 2007.08.01.)

- 가. 겸임 또는 파견근무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 원 소속 기관의 평정권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제출받아 평정함.  
〈참고 자료 (예시)〉
  -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장의 근무성적평정 지표별 의견서
  -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다면평가 자료
  - 해당 교육공무원의 해당 학년도 주요 활동 실적 및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 (초과근무확인서, 표창장 사본, 사진, 포트폴리오, 관련 공문 등)  
나. 겸임 또는 파견근무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서류 제출 시,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Q4. 휴직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방법은?**

**A4**

1. 육아휴직, 동반휴직 등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평정 대상에서 제외함 ("2개월"은 민법 제160조의 역(暦)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2.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 조퇴, 외출, 육아 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의 합산)"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음  
[예시1] 2025. 7. 18. ~ 2026. 7. 17. 육아휴직 교사로서 휴직 전 출산휴가 90일(2025. 4. 19. ~ 7. 17.) 사용 시  
: 실제 근무기간(2025. 3. 1. ~ 2025. 4. 18.)은 2개월 미만  
☞ 다면평가에서 제외  
[예시2] 2025. 4. 30. ~ 2026. 2. 28. 휴직 교사의 경우  
: 실제 근무기간 2025. 3. 1. ~ 2025. 4. 29.(60일)은 역에 의한 계산에 의해 2개월 미만  
☞ 다면평가에서 제외  
[예시3] 2025. 3. 1. ~ 2025. 12. 31. 휴직 교사의 경우  
: 실제 근무기간 2025. 1. 1. ~ 2025. 2. 28.(59일)은 역에 의한 계산에 의해 2개월 근무  
☞ 휴가 미사용할 시 다면평가 대상자임